

연구 발표

판례에 나타난 공인 개념

장 원 상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연구 발표

- 판례에 나타난 공인 개념 -

장 원 상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충돌되는 이 두 조항에 따라 언론보도와 보도대상이 같음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이 판결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보도의 대상자가 공인인지 또는 사인인지 구별해야 하고, 비록 공인이라 하더라도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판례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살펴본 판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갈등에 관련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수집한 95건의 판례(판례수:142건) 중 공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실관계만 따지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 사건을 제외한 89건(판례수:133건)과 2009년 이전의 사건 중 1건을 대상으로 했다.

1. 공인으로 인정한 사례

고위 공무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원고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쌀시장 개방 문제는 한-미 FTA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국민을 기망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른바 ‘공인’에 해당하고,…… 쌀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경쟁력이 약한 국내의 쌀농사 산업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합116282 판결)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법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이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사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내지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정판결과 형사판결의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544341 판결)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었던 원고가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면서 다단계업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다단계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보고도 없이 끼워 넣었고,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정위 고위간부인 원고가 방판법 개정이라는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고위 공직자인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을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56939 판결)이라며 원고가 고위 공직자임을 인정하였지만 보도내용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수수사팀 소속 검사인 원고들이 수사과정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김경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방법으로 새벽 4시까지 잠도 재우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을 무기로 삼아 김경준을 협박하거나 설득·회유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검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기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09나14267 판결)며 원고들을 공직자로 인정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인 원고가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8354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로까지 보인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하남시 시의원 시절 하남시 미관지구에서의 용도변경제한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지연된 틈을 타서 불법특혜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받았고, 위법하

게 증축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하남시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과 공직자인 원고의 시의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하남시민 등의 알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08나4683 판결)며 원고를 공직자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양시의원인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고양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하였고,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시의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가단6328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기관의 장

원고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시절에 한 강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일부 발언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①이 사건 강연 무렵 여러 언론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고위 공직자가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고 문제로 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 ②그에 따라 원고가 당시 여성부에 이 사건 강연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여성 비하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가합101689 판결)라며 원고를 고위 공직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치인

야당의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인 원고가 ‘옛 민주당 몫 대의원 40%에 대한 선정권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전대 보이콧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되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보도 당시에 민주당의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활동과 경선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공적인 인물인 점,……언론매체의 공인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28099 판결)며 원고를 공적 인물로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학 총장

대학 총장인 원고가 연구결과물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기고문은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로서 공익적 성격이 있고,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대학의 총장인 원고가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저자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피고 조선일보가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수증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며 원고가 공적 존재임을 인정하여 언론사에 대한 청구는 정정보도청구만 인정하였고, 기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다.

또 서울대 총장을 지낸 원고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여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공인이고 청렴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인 피고의 보도의 공익

성, 공공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지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단276740 판결)이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전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원고가 반미좌파 성향의 편향된 시각으로 천안함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흑세무민하였다고 매도하면서 언론자유를 방패삼아 천안함 사건 조작설과 음모론을 확산시켰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경력으로 인하여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하여 천안함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공표함으로써 대중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제시한 천안함 침몰에 관한 견해는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62739 판결)고 원고가 비록 비서관을 그만 두었지만 공적 존재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민정수석비서관인 원고 이**과 전 의전비서관인 원고 정**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원고 이**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을 등을 역임한 원고 정**가 소외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바, 이는 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2009. 12. 16. 선고 2009가합69079 판결)라며 역시 전직 비서관인 원고들이 공직자임을 인정하였지만 각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연구원 원장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인 원고가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원고가 문제 삼은 부분을 포함하여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내용 역시 공직자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서 공직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취지를 두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도 공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하였다고 판단”(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가합30936 판결)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해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 ‘패륜을 즐기는 정신 나간 여자’라는 등의 비방성 표현을 사용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라디오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방송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공인’의 범주에 포섭하여 볼 수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가합79614 판결)라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방송인인 원고가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폭행·감금하였고, 그 사람 명의로 사과 메일을 작성했으며, 그 사람과 6개월 전부터 동거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1. 4. 선고 2012나53224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룹 부회장

모 그룹의 부회장인 원고 정**과 약혼자인 원고 한**의 결혼을 위한 가족 상견례 행사와 데이트 장면 등을 불법 촬영 보도하면서 결혼계획과 약혼자 원고 한**의 실명, 이혼 경력 등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정**은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은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한** 역시 원고 정**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라고 하여 원고들이 공적 인물임은 인정하였다. 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다.

방송사 국장

방송사 국장인 원고가 전주시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공사 입찰과정에 대한 감사의 중단을 부탁하거나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방송사의 고위 간부인 데다가, 사회적인 논쟁거리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을 장기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갖는 공적인 인물”(광주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25 판결)이라며 원고의 공적 인물을 인정하였고, 기각판결을 하였다.

언론사 대표

언론사 대표인 원고가 자살한 여성 연예인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여론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은 이른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09가합55315 판결)며 원고의 공적 인물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물리쳤다.

연예인

가수이자 배우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22억여 원을 받고도 광고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의 시계 제작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를 대주주 겸 광고모델로 내세운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비위 등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부실화된 결과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 및 보도행위의 주요한 목적 또한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가합120338 판결)며 원고에게 유명 연예인이라며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지만 허위 사실의 보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대통령 조카사위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비젤 주식을 메릴린치에게 매도하여 7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후 비젤을 폐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고, 원고가 추진한 사업 등이 언론에 의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으로 세인(世人)의 관심을 받아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32404, 2012가합32411(병합), 2012가합32428(병합), 2012가합32435(병합) 판결)이라며 원고에게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정정보도는 인용하였으나, 손해배상은 기각하였다.

2.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방송사 최대 주주

방송사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국내 정보를 미국에 유출하고, 배**으로 하여금 신**에게 정보교육을 하도록 시켰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기사삭제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사삭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직 구의회 부의장

원고가 용산구의회 부의장 시절 자신의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용산구에 매각했다는 보도는 과장보도라며 제기한 정정보도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용산구에 매도할 당시에는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사임한 후 이미 7년여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원고는 사인의 지위에서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어느 정도 공적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앞서 본 공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가합27092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보지 않았고,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은퇴 연예인

은퇴한 탤런트인 원고가 인터뷰 의사가 없고, 기사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원고가 탤런트로 활동할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게재

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4년부터 1년간 CGN TV에서 매주 한 번씩 ‘차**의 즐거운 책임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인이라고 주장하나, CGN TV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특정 교회의 위성방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환경운동가

환경운동가인 원고가 자신이 벌인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운동으로 인해 2조5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보았다고 과장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비록 환경운동가로 정부와 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감시와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자 신분은 아니며 더구나 정부의 고속철도공사에 대하여 환경파괴를 염려하여 반대운동을 하는 등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 지위에 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감수하도록 하면서까지 피고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대단히 의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202834 판결)며 원고를 공인으로 보지 않고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3. 결 론

살펴 본 판결문에는 ‘공인’을 ‘고위 공무원’, ‘고위 공직자’, ‘공직자’, ‘공인’, ‘공적 인물’, ‘공적 존재’, ‘유명 연예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¹⁾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인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²⁾의 규정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

1)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2]]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교육장 및 교육위원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삭제 [1993.6.11]

[본조제목개정 2009.2.3.]

2)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해서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방송인의 경우도 공인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그룹 부회장, 방송사 국장,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도 공인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조카사위라 할지라도 세인(世人)의 관심을 받는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한 경우와,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공중파 방송사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똑같은 전직 공무원일지라도 자리를 떠난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과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처리한 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였고, 자리를 떠난 지 7년 이상 된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은퇴 연예인의 경우도 비록 공식은퇴 이후 잠시 선교 목적의 위성방송에 출연했다 하더라도 공식은퇴기간이 10년을 넘은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름이 조금 알려진 환경운동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와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3조의2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공인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들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지도자, 유명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유명 예술가, 재벌 회장, 당시 세인의 관심을 받는 사람 등을 공인으로 취급한 것을 알 수 있다.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